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2879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환

변 론 종 결 2021. 7. 22.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F과 피고 사이에 2019. 8.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38,455,8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45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35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3. 17. 위 법원에서 “피고(F)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를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4.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22. G, H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9. 9. 26.부터 2021.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9. 26.까지 G, H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F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9. 9. 2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무자력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38,455,890원의 범위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38,45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I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J가 2019. 9. 15.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I가 2019. 9. 26.경 피고의 계좌로 1,22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가 그 중 3,5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이 피고에게 5,22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피고는, I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I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4,5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는 F이 아닌 주식회사 J와 I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사,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38,455,890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하여도,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08. 4. 4.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9.경 이후부터 F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이라고 한다)을 하여 그 무렵 위 각 신청이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과 그에 대한 각 인용결정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과 그에 대한 각 인용결정 및 자신의 개인회생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F의 시효 이익의 포기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